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6. 7.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6. 8.
- 다. 상 정 일 자 : 97. 7. 23 (제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 안 자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나. 제안이유

- 현실에 불합리한 용어 및 조문을 정비키 위함.

다. 주요내용

- 제8조(급수공사대행업자) 제1항중 "각호"를 "각호의 1"로 하고 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 동항중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동조 동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설업법에 의한 상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자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 제8조(급수공사대행업자) 제2항중 "군수는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를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로 하고 동조 동항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서 시설규모와 용도에 적합한 32mm 구경의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설분담금 및 손료 부과기준 마련.

- 시설분담금 : 230,000원

- 급수장치손료 : 580원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민병항)

- 동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 및 조문을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 - 89
----------	---------

제출일자 : 1997. 6. 7.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 용어 정비와 현실여건에 맞지 않은 규정을 개정하고 행정편의적이거나 주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제8조 (급수공사대행업자) 제1항중 "각호"를 "각호의 1"로 하고, 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 동항중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동조 동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설업법에 의한 상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자

- 제8조 (급수공사대행업자) 제2항중 "군수는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를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3,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로 하고 동조 동항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서 시설규모와 용도에 적합한 32mm 구경의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설분담금 및 손료 부과기준 마련

- 시설분담금 : 230,000원

- 급수장치손료 : 580원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를 "군수가"로 한다.

제4조 제1호중 "1호"를 "1가구"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중 "5호"를 "5가구"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각호"를 "각호의 1로"하고 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 동항중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동조 동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제8조 제2항중 "군수는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를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로 하고 동조 동항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하고 동조 동항 단서 및 제12조 제1항 단서중 "영세민 가구에서"를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가"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시설"을 "사설"로 하고 동조 동항중 별표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하며 동조 동항중 "전조"를 "제11"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2호"를 "2가구"로 하며 동조 동항중 "각호별"을 "각 가구별"로 한다.

제16조 제3항중 "하자보수를 위한"을 "하자보수에 대한"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시행중에 신청인"으로 하며 동조 제5항 "보증보험권 상장유기증권, 국공채 등의 유기증권으로"를 "보증보험증권 등으로"로 한다.

제21조 제2항중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를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물건의 적치"로 한다.

제27조 제1항중 "3호에 의한 업종 구분에 의한다"를 "제3호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업종구분은"을 "업종구분이"로 한다.

제28조 제4항중 "1호"를 "1가구"로 한다.

제29조 제2항중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을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하고 동조 동항중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별(분양단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 가구는 해당급수처에서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를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 세대분할을 군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로 한다.

제30조 제목 및 동조 제2항중 "시험"을 "점검"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를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청구인이"를 "사용자가"로 하며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를 "요금과"로 한다.

제31조 제1항중 "익월"을 "다음달"로 한다.

제32조 제2항중 별표 제4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4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 "포함하여"를 "구분하여 함께"로 한다.

제35조 제2항중 "익월분"을 "다음달"로 한다.

제36조 제4호중 "시험"을 "점검"으로 하고 동조 제5호중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급수정지 해제수수료"로 한다.

제37조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호의"로 한다.

제40조 제목중 "정수"를 "급수정지"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 동항 제4호중 "작용"을 "작동"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7호 "정수처분된"을 "급수정지처분된"으로 하며 동조 동항 제8호 및 제9호를 삭제한다.

제40조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정수처분"을 "급수정지처분"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를 "제1항"으로 한다.

제43조 제1항중 "사용료 또는 분담금"을 "사용요금 또는 분담금등"으로 한다.

제43조중 "급수장치를"을 "급수장치의 철거를 명하거나 군수가"로 한다.

제44조 제1항중 "조정"을 "부과"로 한다.

제45조 "요금"을 "사용요금"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허가 및 기타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화순군의 관할구역중 <u>군수</u> (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공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p>	<p>제3조 (급수구역) <u>군수가</u> </p>
<p>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용급수장치 : <u>1호</u>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u>5호</u>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생략) 	<p>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1. <u>1가구</u> 2. <u>5가구</u> 3. (현행과 같음)</p>
<p>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p> <p>①급수공사대행업자는 다음 <u>각호</u>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 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 소지자</u> 	<p>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p> <p>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u>각호</u>의 1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 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자로 한다.</p> <p>(삭 제)</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2. <u>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취득자 (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u></p> <p>(신 설)</p> <p>②<u>군수는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u></p> <p>1. <u>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4,000원</u></p> <p>2. <u>급수공사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수수료 1건당 2,000원</u></p> <p>3. <u>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u> <u>신규 1건당 4,000원,</u> <u>갱신 1건당 2,000원,</u></p> <p>제1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p> <p>① (생략)</p>	<p>1. (현행 제2호의 같음)</p> <p>2. <u>건설업법에 의한 상수도설비 전문 건설업 면허소지자</u></p> <p>3. <u>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u></p> <p>②<u>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u></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제1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p> <p>①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 <u>전항</u>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용 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p> <p>③ (생략)</p>	<p>② 제1항</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 (공사비의 선납)</p> <p>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신청 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 는 <u>은행</u>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 야 한다. 다만, <u>영세민가구</u>에서 신 청하는 급수공사비는 6개월간 분납 할 수 있으며, 군수가 선납할 필요 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 는 선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④ (생략)</p>	<p>제11조 (공사비의 선납)</p> <p>①</p> <p>.</p> <p><u>금융기관</u></p> <p>. . . <u>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u> <u>상자가</u></p> <p>.</p> <p>.</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 (시설분담금)</p> <p>① <u>전용급수 장치</u>와 <u>시설</u> 공용급수자치 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 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는 자는 별표 제1호의 시설분담금을 <u>전조</u>의 공사비와 동시 에 납부하여야 한다.</p> <p>다만, <u>영세민가구</u>에서 신청하는 시 설분담금은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p>	<p>제12조 (시설분담금)</p> <p>① <u>시설</u></p> <p>.</p> <p>.</p> <p>.</p> <p>. 제11조</p> <p>.</p> <p>. . . <u>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u> <u>자가</u></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u>각호별로</u> 계량기를 설치하거나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u>각호별로</u> 구분 산정한다.</p>	<p>②2가구 <u>각 가구별</u> <u>각 가구별로</u></p>
<p>제16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p>	<p>제16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p>
<p>①~② (생략)</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 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③하자보수에 대한</p>
<p>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증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p>	<p>④. . .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시행중에 신청인</p>
<p>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⑤ <u>보증보험증권 등으로</u></p>
<p>제21조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p>	<p>제21조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p>
<p>① (생략)</p>	<p>①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p>	<p>.....</p>
<p>제28조 (요금의 조정) ①~③ (생략)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 <u>종에 2대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u> <u>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u> <u>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u></p>	<p>제28조 (요금의 조정) ①~③ (현행과 같음) ④1가구</p>
<p>제29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 (생략) ②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 <u>위) 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u> <u>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u> <u>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u> <u>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2호 이상</u> <u>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u> <u>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u> <u>호별(분양단위) 평균 사용량에 대하</u> <u>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u> <u>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u> <u>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u> <u>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u></p>	<p>제29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u>단독주택, 공동주택</u> 이 경우 사용 <u>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u> <u>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u> <u>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가구</u> <u>주택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 세</u> <u>대분할을 군수가 직권으로 처리할</u> <u>수 있다.</u></p>
<p>③ (생략) 제3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p>	<p>③ (현행과 같음) 제3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점검)</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p>	<p>① <u>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u></p>
<p>②전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점검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p>	<p>②제1항 . . . 의한 <u>점검결과</u></p>
<p>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다음달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p>	<p>②. <u>사용자가</u> <u>요금과</u></p>
<p>제31조 (납기와 징수방법)</p>	<p>제31조 (납기와 징수방법)</p>
<p>①요금은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중지 또는 급수 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① <u>다음달</u></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4조 (납부고지)</p>	<p>제34조 (납부고지)</p>
<p>①(생략)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u>가름할 수 있다.</u></p>	<p>①(현행과 같음) <u>(삭 제)</u></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u>포함하여</u> 고지할 수 있다.</p> <p>제35조 (일시급수사용 요금과 선납)</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u>익월분</u>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p> <p>제36조 (제수수료) (생략)</p> <p>1~3 (생략)</p> <p>4. 제30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u>시험</u>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1,700원 급수관 구경 40m/m까지 3,400원</p> <p>5. 제40조 제2항의 <u>징수처분</u> <u>해제수수료</u> 급수관 구경 25m/m까지 3,420원 급수관 구경 40m/m까지 6,820원</p> <p>제37조 (요금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u>각</u>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u>요금 및 수수료</u>를 감면할 수 있다.</p> <p>1~3 (생략)</p>	<p>③ <u>구분하여 함께</u></p> <p>제35조 (일시급수사용 요금과 선납)</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다음달</u></p> <p>제36조 (제수수료)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 <u>점검</u> </p> <p>5. 제40조 제2항의 <u>급수정지</u> <u>해제수수료</u> </p> <p>제37조 (요금등의 감면) <u>각</u> 호의</p> <p>1~3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0조 (징수처분)</p> <p>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p>5~6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p>10~13 (생략)</p> <p>②전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p> <p>③제1항의 제1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에 의한 징수처분은 3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재40조 (급수정지처분)</p> <p>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4. <u>작동</u> <p>5~6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u>급수정지처분된</u> (삭 제) (삭 제) <p>10~13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에 . . . <u>급수정지처분</u> . . .</p> <p>③제1항</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2조 (과태료등)</p> <p>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u>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 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42조 (과태료등)</p> <p>① <u>사용요금 또는 분담금등</u></p> <p>.</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3조 (급수장치의 철거)</p> <p>①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 장치를 신설한자에 대하여는 해당 <u>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43조 (급수장치의 철거)</p> <p>① <u>급수장치의 철거를 명하거나 군수가</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4조 (이의 신청)</p> <p>①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의 <u>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u></p>	<p>제44조 (이의 신청)</p> <p>① <u>부과</u></p> <p>.</p> <p>.</p> <p>.</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5조 (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p> <p>이 조례에 의한 <u>요금</u>,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 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p>	<p>제45조 (지방세징수 예의 준용)</p> <p>..... <u>사용요금</u></p> <p>.....</p> <p>.....</p> <p>.....</p>

(별표 제1호)

시 설 분 담 금

계량기구경별	분 담 금 액	비 고
13 m/m	34, 120원	개조시에는 신규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 m/m	81, 890원	
25 m/m	136, 480원	
<u>32 m/m</u>	<u>230, 000원</u>	
40 m/m	330, 980원	
50 m/m	545, 930원	
75 m/m	1, 091, 860원	
100 m/m	2, 183, 710원	
150 m/m	4, 367, 420원	
200 m/m	8, 734, 850원	
250 m/m	13, 648, 200원	

(별표 제4호)

급 수 장 치 손 료

계량기구경별	분 담 금 액	비 고
13 m/m	270원	
20 m/m	370원	
25 m/m	450원	
<u>32 m/m</u>	<u>580원</u>	
40 m/m	810원	
50 m/m	1,390원	
75 m/m	1,700원	
100 m/m	2,230원	
150 m/m	2,840원	
200 m/m	6,820원	
250 m/m	8,530원	

(별지 제4조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년	월 일한
납부장소		
위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인)

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보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년	월 일한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수납날짜도장		(인)

영수필통지서
(화순군청통보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년	월 일한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수납날짜도장		(인)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년	월 일한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수납날짜도장		취급자인

(별지 제5호 서식)
(갑)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반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위반사실	일시	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	까지
위반행위자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확인	

특기사항

(을)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 계 년 도	세 입 과 목
위반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 부 기 한	납 부 장 소
위반사실	일 시	내 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 부 일 자	의견진술기간
위반행위자서명		주민등록번호	의견진술기간 단속공무원확인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화 수 순 군 수 (인)

(별)

(수남은행 보관용)

과태료 납부서

만	행	민	호	회	계	년	도	년	도	세	입	과	목
위	만	행	위	자	성	명	주	소					
과	태	료	금	액	원	납	부	기	간	까지	납	부	장
													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남은행

수남날짜도장

화 부 순 군 수 (인)

(군통보용)

과태료 납부 영수필 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남은행

화 순 군 수 귀하

수남날짜도장

(정)

(무)

(개인통지서)

과태료 납부 영수필 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	계	년	도	년	도	세	이	과	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	부	기	간	까지		납	부	장	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남은행

수남날짜도장

취급자인

(별지 제10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1) 일 번 호	(2) 통 지 서 민 호	(3) 과 태 료 처 분 일 통 지 일	(4) 독 촉 장 반 부 일	(5) 당 초		(6) 독 촉	(7) 납 액	납 부 의 무 자		(10) 과 태 료 납 부 일	이 의 제 기	
				(8) 성 명	(9) 주 소			(11) 이 의 제 기 인	(12) 번 위 통 고 일			